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면 종전에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을 안내받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27. ~ 5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본문 중 “받으면”을 “받은 경우(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”으로, “확인하여야”를 “확인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제13조의2제3항,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, 제5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”를 “같은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(이하 “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”이라 한다)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(이하 “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”이라 한다)가”를 “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확인되면”을 “있다고 확인되면 그 사실을”로, “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”를 “지체 없이 알려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에 해당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, 첨부 서류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)
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 · 절차) ① ~ ③ (생략)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 연금의 지급 신청을 <u>받으면</u> 기 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 족관계증명서와 소득·재산 관 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 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<u>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초연 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3조의2(기초연금 수급희망 이 력관리) ①·② (생략)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</p>	<p>제13조(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 · 절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받은 경우</u> <u>(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</u> <u>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</u> <u>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</u> <u>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확인해야</u> -----. <u>다만, 기초연금</u> <u>수급희망자가 제1항 또는 제3항</u> <u>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</u> <u>를 제출할 때 그 확인에 동의하</u> <u>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</u> <u>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</u></p> <p>제13조의2(기초연금 수급희망 이 력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</u></p>

기초연금 수급희망자(이하 “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”이라 한다)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(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)에게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,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

청인이 -----

-----.

⑤ -----

제4항-----

--- 있다고 확인되면 그 사실을 -----

--- 지체 없이 알려야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같은
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
초연금 수급희망자(이하 “기초
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

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
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인”이라 한다)가 -----
-----.

⑥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
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
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
인된 날에 해당 기초연금 수급
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10
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라 기초
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
본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
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
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3
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
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, 첨부
서류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
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671